



이용계약 사항 안내

잡은손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12조·제13조·제15조~제17조 요약 | 최종 개정 2025. 1. 1.(6차)

1. 계약 체결 및 대상자 (운영규정 제12조 제1호)

-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이용자 본인이 치매·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,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체결한 계약도 유효합니다.

2. 계약기간 및 재계약·자동연장 (운영규정 제12조 제2호)

-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**장기요양인정서 상 유효기간**을 기준으로 하며, 비대상자는 양 당사자 협의로 정합니다.
- 계약이 확정되면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고,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합니다.
- 센터는 **계약만료 1개월 전**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, 이용자(보호자)는 **15일 이내** 회신합니다.
-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으면 계약은 **1년간 자동 연장**됩니다. (정원·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제외)
- 인정등급·급여비용·비급여비용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합니다.

3. 계약 해지 및 자동퇴소 (운영규정 제12조 제3호)

- 이용자(보호자)가 해지를 원할 경우 **해지 희망일(만료일) 15일 전까지** 신청해야 합니다.
- 이용자 수칙·계약사항 위반 시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퇴소 사유: ①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 판정 ② 타 이용자의 안전·인권에 심대한 위협 ③ 이용료 2회 이상 연체 후 서면 최고에도 14일 내 미납

4.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 (운영규정 제15조)

- 본인일부부담금**: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, 급여제공계약서·센터 게시판 등에 명기합니다.
- 비급여 항목**: 식사재료비 1회 3,000원, 간식비 1회 500원
- 입원·통원치료 의료비 및 특별 보호 시 발생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5. 이용료 납부 방법 (운영규정 제16조)

- 당월 이용료는 **매월 10일까지** 센터 지정계좌로 납부합니다. (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월 내, 최대 해당 월 30일까지 납부)
- 납부계좌: **농협 301-0183-3580-31 (예금주: 잡은손노인복지센터)**
-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전액 지불하며, 개별 요청에 의한 물품·용역 실비는 별도 부담합니다.

6. 비용 변경 시 안내 (운영규정 제17조)

- 이용료 변경 사유(물가 변동, 등급 변동, 수가 변경, 재계약 등) 발생 시 계약을 갱신하며, **갱신 최소 14일 전** 이용자·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합니다.
- 변경 절차: 사유 발생 → 보호자 상담 → 재계약

※ 본 자료는 운영규정의 이용계약 관련 조항을 요약한 안내문이며,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 원문 및 개별 급여제공(이용)계약서를 따릅니다.

잡은손 시니어홈(잡은손노인복지센터) | 경상북도 김천시 자산로 108-1 | ☎ 054-432-2788